

<여 백>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

2010.

손해보험협회

제1장 적용통칙	3
1. 목적	3
2. 내용년수표 제정기준	3
3. 적용대상	3
4. 보험의 목적의 범위	3
5. 보험가액 평가방법	6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8
7. 손해사정상 유의점	10
제2장 보험가액의 평가기준	19
제1편 총론	21
I.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 평가의 중요성	21
II. 보험가액 평가의 기준	22
제2편 건물의 평가	25
I. 건물의 정의 및 분류	25

II. 건물의 평가	32
III. 감가공제액의 산출	33
IV. 건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38
제3편 구축물의 평가	39
I. 구축물의 정의 및 범위	39
II. 구축물의 평가	39
III. 수리비의 감가적용	40
IV. 구축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40
제4편 시설의 평가	41
I. 시설의 정의 및 범위	41
II. 시설의 평가	41
III. 시설의 감가율 적용	42
제5편 기계장치의 평가	44
I. 기계장치의 정의 및 분류	44
II. 평가상의 특질	48
III. 재조달가액의 평가	50
IV. 감가공제액의 산출	55

V. 기계 및 장치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61
제6편 공·기구의 평가	62
I. 공·기구의 정의 및 범위	62
II. 공·기구의 추정내용년수	63
III. 감가공제	64
IV. 수리비의 감가적용	64
제7편 영업용 집기비품의 평가	65
I. 영업용 집기비품의 정의 및 범위	65
II. 평가방법	66
III. 감가공제	68
IV. 수리비의 감가적용	69
V. 영업용 집기비품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69
제8편 가재의 평가	70
I. 가재의 정의 및 범위	70
II. 평가방법	72
III. 수리비의 감가적용	78
IV. 가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78

제9편 차량 및 운반구의 평가 79

제10편 재고자산의 평가 80

 I. 재고자산의 정의 및 분류 80

 II. 재고자산의 평가 81

별표 89

제 1 장 적 용 통 칙

제 1 장 적용 통칙

1. 목 적

이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은 손해사정시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험금 지급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년수표 제정기준

세법상 내용년수를 참고하여 일정율의 환산율을 적용, 내용년수표를 산출하였다.

3. 적용대상

이 평가기준의 적용대상은 보험의 목적물로 하며, 보험의 목적물은 건물, 구축물, 시설, 기계장치, 공·기구, 영업용 집기비품, 가재, 차량 및 운반구, 재고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4. 보험의 목적의 범위

(1) 건 물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써 주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을 말한다.

가. 본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블록조, 철골조, 토벽조, 목조, 간이목조, 간이목골물탈조, 간이철제외파이프조 등으로 된 건물을 말한다.

나. 건물의 부속물

간막이, 대문, 담, 공간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건물의 부속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화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또는 가스설비, 냉방, 난방, 통풍 또는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제어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2) 구축물

구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중 건물로 규정된 이외의 제반 건조물을 말하며, 철도·궤도사업용, 발전·송배전용·방송·무선통신용, 경기장·유원지용 건조물 및 정원, 포장도로, 선전탑 등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시설

시설이란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써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4) 기계장치

기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인간에게 유용한 장치를 뜻하며, 장치라 함은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을 말한다.

(5) 공·기구

공구라 함은 작업과정에서 주된 기계의 보조구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기구라 함은 기계중 구조가 간단한 것 또는 도구 일반을 표시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영업용 집기비품

영업용 집기비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직업상의 필요에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7) 가 제

가재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상의 가정생활용구로써 소유하고 있는 가구,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료품, 연료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포괄한다.

(8) 차량 및 운반구

철도용차량,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용차량 및 운반구 등을 말한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라 함은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저장품이라 함은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소모품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예 : 가구공장의 연마포, 연마지)

5. 보험가액 평가방법

(1) 건물, 구축물, 시설

원칙적으로 원가방식(복성식평가법)에 의하여 평가대상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을 재축하는데 필요한 재조달가액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하여 감가공제를 함으로써 현재가액(시가액)을 산출한다.

$$\text{현재가액} = \text{재조달가액} - \text{감가공제액}$$

$$\text{*감가공제액} = \text{재조달가액} \times \text{총감가율}$$

$$\text{*총감가율} = \text{경년감가율} \times \text{경과년수}$$

$$\text{*경과년수} = \text{사고년월} - \text{취득년월}$$

*경과년수를 구할 때에는 월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한다.

(2) 기계장치, 공·기구, 영업용 집기비품, 가재, 차량 및 운반구

평가대상물건과 동일한 용도, 구조, 형식, 시방능력의 기계를 재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하여 감가공제를 함으로써 현재가액을 산출한다.

$$\text{현재가액} = \text{재조달가액} - \text{감가공제액}$$

$$\text{*감가공제액} = \text{재조달가액} \times \text{총감가율}$$

$$\text{*총감가율} = \text{경년감가율} \times \text{경과년수}$$

$$\text{*경과년수} = \text{사고년월} - \text{취득년월}$$

*경과년수를 구할 때에는 월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한다.

(3) 재고자산

상품(제품) 및 원·부재료 등의 재고자산은 평가대상물건의 재조달가액이 평가기준이 되며, 재조달가액은 재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재조달에 소요되지 않는 광고선전비, 로열티 등은 제외한다.

$$\text{*현재가액} = \text{재조달가액}$$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1) 건 물

가. 감가율의 산출

추정내용년수란 건물의 효용지속 가능년수를 말하며, 세법상의 내용년수에 1.5배~2.0배를 적용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나. 잔가율의 수정

- ① 건물의 내용년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중에 있는 건물은 당해 건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30%로 수정한다.
- ② 보통의 유지관리 외에 건축법상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축부 및 내부 마무리 수리공사가 된 경우에는 건물의 개·보수 및 경과년수를 감안하여 잔가율을 수정한다. (제 2편 건물의 평가 참조)

(2) 구축물

구축물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5배~2.0배를 적용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3) 시설

시설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별표3】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를 적용한다. 단, 숙박 및 음식점중 【별표4】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년수 8년, 최종잔가율 20%로 하고 경년감가율은 매년 10.00%로 한다.

(4) 기계장치

가. 감가율의 산출

기계장치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2배~2.0배를 적용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나. 잔가율의 수정

기계장치에 대한 잔가율은 재조달가액의 30% 이하가 되더라도 현재 기계로써 생산계열중에 가동되고 있는 경우는 해당기계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30%로 수정한다. 다만, 운전사용조건, 유지관리조건이 양호한 기계 및 개조, 대수리를 한 기계에 대해서는 그 실태에 따라 재조달가액의 30%~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적의수정할 수 있다.

(5) 공·기구

공·기구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구)세법상 내용년수를 참고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6) 영업용 집기비품

영업용 집기비품의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2배 ~2.0배를 적용하였고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7) 가 재

가재의 추정내용년수는 (구)세법상 자산별 내용년수를 참조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8) 차량 및 운반구

차량 및 운반구의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2배 ~2.0배를 적용하였고,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단,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명기된 차량은 자동차보상 실무지침을 따른다.

7. 손해사정상 유의점

(1) 건물, 구축물

가. 문화재에 대한 감가상각 제외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된 건조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에 있어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나. 복합구조건물의 내용년수

해당구조, 건축시기, 용도가 다른 건물의 내용년수와 감가율은 건물 연면적에 대하여 합산평균한 감가율을 산출 적용하되 복합된 구조, 용도 및 중·개축부분이 전체건물(중·개축 포함)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20% 이하이면 무시한다. 다만, 복합구조건물중 한쪽의 구조가 간이목조, 간이목골물탈조, 간이철재외파이프조, 컨테이너일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년수 및 감가율을 적용한다.

다. 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철거건물의 평가

퇴거·철거가 결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년수, 수익력에 있어서도 거의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최종잔가율을 20%로 보고 사고시점에서 철거시점까지의 경과년수를 해당건물의 잔여기간으로 보아 최종잔가율과 합산 평

가한다.

마. 모델하우스의 평가

모델하우스의 추정내용년수는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년감가율은 월할로 안분 평가하며 최종잔가율은 재활용도를 감안하여 20%로 한다. 다만, 상용주택 전시장이나 상설주택문화관 등 그 구조를 유지한채 장기사용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내부를 수시로 개조하는 인테리어 부분과 상설구조물을 구분평가한다. 인테리어의 내용년수는 해당사업 전시기간으로 하고 상설구조물의 추정내용년수는 【별표1】 건물 구조별 내용년수를 따른다. 다만, 상설 모델하우스가 아닌 경우는 가설 존치기간을 당해사고시점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2) 시 설

가. 시설의 개·보수와 경과년수 적용

- ① 제조달가액의 50% 미만을 개·보수하였을 경우 : 최초 시설년도 기준
- ② 제조달가액의 50%~80%를 개·보수하였을 경우 : 최초 시설년도로부터의 경과년수와 개·보수후 경과년수를 합산 평균한다.
- ③ 제조달가액의 80% 이상일 때 개·보수시점을 기준한다.

나. 유의사항

건물의 종물이나 부속설비로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특약이 없는 한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보험의 목적물은 시설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부착하거나 설치한 물건이 건물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된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속설비로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컨대, 임차인이 벽을 새로 보강했거나 지붕을 다시 이음으로써 임차인이 부가한 "벽재료"와 "기와"는 건물주의 소유권에 흡수되므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3) 기계장치

가. 중고구입기계의 평가

- ① 제작년도를 알 수 있을 경우 : 당해기계의 신품 제조달가액에 경과기간을 감가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 ② 제작년도를 알 수 없을 경우 : 기계의 상태에 따라 신품제조달가액의 30%~50% 범위내에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 ③ 중고품가격이 신품제조달가액보다 비싼 경우 : 신품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④ 중고품가격이 신제품제조달가액을 감가상각한 것보다 낮을 경우 : 시중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나. 신제품구입기체인 경우에도 신제품제조달가액을 감가상각한 가액이 시중중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중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다. 기계의 내용년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업종별로 적용하되 생산공정이 분리되는 경우 당해공정별 각각 해당업종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라. 신구교환공제에 대한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집기비품·가재

가. 수용장소

수용장소는 원칙적으로는 건물내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전용부분의 베란다 및 처마끝 등에 놓여있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옥상 및 담장내에 수용되어 있는 가재도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 영업용 집기비품과의 관계

같은 책상이라도 가정생활에 사용되는 것은 가재이며,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영업용 집기비품이다. 예컨대, 여관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침구류는 영업용 집기비품이다.

다. 영업용 집기비품에 유사한 것

학자의 서적이라든가 기생의 거문고, 의류 등은 영업용 집기비품으로서의 색채가 강하나 통상 가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재로 처리된다. 그러나, 농가의 경운기, 어망 등은 금액도 교액이므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라. 기계·기구

가정용 전기기구류가 가재인 것은 당연하나 가내공업적 프레스와 재봉틀이 몇대라도 놓여있는 경우에는 가재로 보기가 어려우며 별도의 기계·기구로 부보할 필요가 있다.

마. 동식물

약관상 별다른 규정은 없으나 생물은 이른바 가재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손해의 발생 방법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재라고는 해석되지 않고 화분, 수족관은 가재에 포함한다.

바. 서화, 고서류, 골동품 등의 감가상각 제외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가치를 지닌 개인소장 서화, 고서류, 골동품에 대하여는 공인감정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사. 기타

- ① 안경, 틀니, 콘택트렌즈, 의수족 등은 신체의 일부이지만 분리상태에서 손해발생시에는 가재도구로 평가한다.
- ② 은수저의 경우 사용시에는 가재에 포함하며, 보관시에는 귀금속에 해당한다.

<여 백>

제 2 장 보험가액의 평가기준

제 2 장 보험가액의 평가기준

제1편 총 론

I.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 평가의 중요성

손해보험의 사명은 일정한 우연적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손해보험은 피보험물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보험에 대한 기본개념으로서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그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기는 손해일 것, ②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른바 이득금지의 원칙에 상응하는 공정을 기함이 필요하다. 이점 때문에 법률과 약관은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의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76조) 이와 같이 보험가액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이며, 결국 평가는 손해의 보상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같이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초과보험, 일부보험의 규정이 있고, 보상액 산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상이하다. 다시 말해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상응해서 적절히 설정하게 되면, 보상액은 그 손해가 전액이지만, 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설정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초과보험이 되어 무효가 되며(상법 제669조) 또

②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보험으로써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액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산정되고 피보험자로서는 손해의 전액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상법 제 674조)

따라서 이상적인 손해보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계약시의 보험가액을 적정히 평가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험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보험가액 평가의 기준

일반적으로 평가라 함은 그 평가대상물에 대해서 평가목적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그 가치를 판정하고 가액으로서 표시하는 것이다. 보험가액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 법률이나 약관에 상세하게 정하고 있기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이나 약관에도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외국의 법률예와 약관에 비추어 보아도 평가대상인 보험의 목적은 이것을 계속사용재와 교환재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계속사용재에는 건물, 기계장치, 영업용 집기비품류, 가재가 속하며, 교환재에는 상품이 있다.

손해보험은 손해보상에 관한 원상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는 계속사용재이거나 교환재이거나를 불문하고 그 재취득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

1. 계속사용재

부동산 감정평가방식으로는 ① 원가방식(복성식 평가법), ②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③ 수익방식(수익환원법) 등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원가방식(복성식 평가법)에 의한다. 원가방식(복성식 평가법)이라 함은 동일구조, 용도, 질, 규모, 형, 능력의 것을 제조달가액(신조달가액)을 산출해서, 그것으로부터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 등에 상응하는 감가를 공제한 현재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제조달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① 건물의 경우 재건축비를 또 기계·영업용 집기 등의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원칙이지만 ② 이것을 추산하는 편법으로서 평가대상건물의 취득시에 있어서의 제조달가액 및 취득시로부터 평가시까지의 가격변동율을 알 경우에는 그 제조달가액의 가격 변동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①의 방법에 의한다. 감가공제방법은 이른바 정액법, 정율법 등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정액법이 채택되고 있다.

2. 교환재

교환재인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사용이란 관념은 아니므로 일부의 예외(덤핑물품, 사장품 등)를 제외하면 제조달가액이 재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구입상품이라면 ① 그 구입가격에 운임, 제비용을 가산한 다시말해서 구입원가가 재취득가액이 되며 ② 생산공장에 있는 반제품, 재공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액에 그 공정에 따른 공임, 기타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재취득가액이 된다.

이상이 평가기준의 원칙이지만 평가대상물의 종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다.

제2편 건물의 평가

I. 건물의 정의 및 분류

1. 건물의 정의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
과 벽이 있는 것으로써 주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
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을 말한다. 건물에는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등도 포
함된다.

2. 건물의 범위

(1)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물이란 건물의 외벽, 기둥, 보, 지붕(지붕틀 포
함)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른 건물과 이어지지 않고 모
두 독립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하여 그 부분을 하나의 건물로 본
다.

가. 통로로만 사용되는 복도로서 접속되는 건물과 공통의
보, 지붕(지붕틀 포함)을 갖지 않는 것

나. 달아낸 지붕(본건물 1층에서 벽체없이 경사지게 달아

낸 지분을 말함)

(2) 건물인수의 단위

화재보험 계약규정에서는 건물인수단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에 관하여 그 전체를 인수단위로 하고 다음의 경우외에는 그 일부만 인수하거나 그 일부분을 제외하여 인수할 수 없다.

가. 지하실(반지하실 제외) 및 기초공사를 제외한 경우

나.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부분 또는 공유부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경우

다. 건축(공사)도급업자가 인도전의 공사부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경우 또는 발주자가 인도를 받은 부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경우

(3) 본건물 외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막이, 대문, 담, 공간,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4) 건물의 종물(從物), 그밖의 부속설비

화재보험이나 동 계통의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피

보험자 소유의 간막이 및 건물의 종물, 전기, 가스, 난방, 냉방, 그밖의 부속설비는 특약으로 제외하지 않는 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통상 건물이라 함은 이와같은 종물과 부속설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나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간막이라든가 건구(建具) 등을 장치하거나 조작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약관에서 말하는 종물이나 부속설비의 범위는 보험회사의 책임범위와 관계가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되며 법률적인 넓은 측면에서 볼 때 민법상의 건물로 해석되어 민법의 원칙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생각되나 민법 제100조에는 주물(主物)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常用)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에 속하는 다른 물건(조작설비 등)을 부속시킨 경우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하고(민법 제100조 제1항) 그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로(민법 제100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보면 건물에 부속된 물건은 건물과 같은 소유에 속하는 한 그 건물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소유부분은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위를 판정하기는 곤란할 경우가 많고 또 손해발생시에는 피보험이익의 유무, 종물의 가액이 높을 때에는 보험금액의 적부에 대하여 분쟁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보험계약 인수시 건물에 포함하는지 또는 제외하는지 그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보험계약상 이와 같은 부속물의 법률구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임차인(차가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건물에 시설한 물건을 모두 조작설비로 보는 예가 많은데 이것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속물

준거법으로서는 민법 제646조¹⁾와 민법 제256조²⁾ 단서에 해당되는 수도, 전기, 가스시설이나 다다미, 건구(建具) 또는 차양과 간판 등이 있으며 이것은 다시 분리, 복구시의 건물본체에 대한 영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① 분리하면 건물본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민법 제646조에 준거하는 것으로서 수도, 전기, 가스시설이나 다다미, 건구(또는 벽의 일부에 고착시킨 간막이 포함)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것은 건물사용상의 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시설되었으나 건물의 구성부분에 속하지 않는 반면, 시설결과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분리하면 경제상 불리한 것을 말한다. 피보험이익은 소유권에 의거하는 부

속물매수청구권과 철거권³⁾이 된다.

- ② 분리하여도 건물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민법 제256조 단서에 준거한 것으로서 차양, 간판, 건물에 고착 안된 간막이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것은 권원(사용권 내지 차용권)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한 것이며 이를 분리 복구하여도 건물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보험이익은 소유권에 의거하는 철거권이다.

나. 부합물

준거법으로서는 민법 제256조 본문에 해당되는 마루, 바닥, 다락방, 기타 개장부분이며, 예컨대 임차인이 주택을 요정식(또는 사무실을 다방)으로 개장하기 위하여 창문을 내거나 벽을 고치거나 마루 등을 깔았을 경우 이것은 건물의 일부가 되어 임차인 독자의 소유가 안된다. 이런 기둥, 벽이나 마루 등과 같이 건물과 합체되어 이것이 건물의 본체에서 분리 복구되는 것이 경제적 불합리로 판정되는 것으로 피보험이익은 유익비용상환청구권⁴⁾이다.

이상과 같은 부속물, 부합물 등 조작설비중 부속물은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채권이므로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화재보험이나 각종 종합보험에서는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조작설비계

약은 부속물에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부속물의 평가 방법은 철거한 경우의 시가가 아니고 건물에 부착한 상태로 계속 사용할 경우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주1)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건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주2)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3)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복구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주4)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

(5) 공사비의 분류

건물의 공사비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가. 건물의 일부인데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건축주의 지급재료(목재, 마감재료 등), 옥내의 전기, 가스, 수도, 냉방, 난방 각 설비, 붙박이 가구

나. 건물로부터 제외되는 것
대지정지비, 건물취득비, 수목이전비, 옥외의 전기 등의 각 인입(引入)비용, 조경비

II. 건물의 평가

1. 평가방법

총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물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원가방식(복성식 평가법)에 의하며 평가대상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을 재축하는데 필요한 재조달가액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하여 감가공제를 합으로써 현재가액(시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현재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주)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소위 재건축비를 말하며 설계감리비도 이것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감가공제액의 산출방법은 총론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액법에 의한다.

또한 재조달가액(재건축비)의 산출방법은 통상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 ① 평가대상물건에 대하여 목재, 철재 등의 사용재료의 종별, 품목, 수량 및 소요노동시간 등을 적산하여 각각의 단가에 재료량 및 노동량을 곱하여 당해 물건 전체의 공사원가를 구하고 이것에 부대경비, 운반비를 가산하여 재건축비를 산출하는 방법
- ② 평가대상물건 또는 동 유형의 물건에 대하여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후의 가격변동율(건축비 지수)을 곱하여 재건축비를 추산하는 방법

③ 건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평가는 건물의 내용년수에 준한다.

2. 기초공사, 부속설비공사

현재 행하고 있는 건물의 보험계약에는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① 기초공사비를 제외하는 경우와 ② 부속설비공사를 건물본체와는 별개항목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초공사 및 부속설비는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주) ① 기초공사라 함은 터파기공사, 흙막이공사, 지정공사, 기초판공사 등을 말하며, 기초공사비중 지반보강을 위한 Pile 설치비용 등은 계약자의 명시적인 부분의 사표시가 없는한 제외한다.

② 부속설비라 함은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화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또는 가스설비, 냉방, 난방, 통풍 또는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제어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III. 감가공제액의 산출

1. 감가율의 산출

앞서 “II. 1. 평가방법”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계속사용재로 하여 건물 감가공제는 정액법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감

가공제액은 재조달가액에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감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감가율의 계산에는 그 인자로서 ① 추정내용년수, ② 최종잔가율, ③ 경과년수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추정내용년수란 건물의 효용지속가능년수를 말하며 세법상 내용년수의 1.5배 ~ 2.0배를 적용하였다.

또한 여기서 최종잔가율은 추정내용년수 경과시에 있어서의 재조달가액에 잔존가치에 대한 비율이며 건물종별 전반에 걸쳐 20%로 하였다. 따라서 감가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방법 : 소정의 추정내용년수를 사용하는 경우

$$\text{경년감가율} = \frac{\text{재조달가액} \times 100\% - \text{최종잔가율} \times 20\%}{\text{추정내용년수}}$$

$$\text{감가율} = \text{경년감가율} \times \text{경과년수}(\text{경과월수}/12)$$

2. 잔가율의 수정

- (1) 건물의 내용년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중에 있는 건물은 당해건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30%로 수정한다.
- (2) 보통의 유지관리외에 건축법상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 하는 축부 및 내부 마무리 수리공사가 된 경우에는 건물의 개보수 및 경과년수를 감안하여 잔가율을 수정한다.

가. 건물의 개축 또는 대수선시 경과년수 적용

- ① 재조달가액의 50% 미만을 개·보수하였을 경우 : 최초 건축년도 기준
- ② 재조달가액의 50%~80%를 개·보수하였을 경우 : 최초 건축년도로부터의 경과년수와 개·보수후 경과년수를 합산, 평균한다.
- ③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일 때 : 개·보수시점을 기준한다.

3. 손해사정상 유의사항

(1) 문화재에 대한 감가상각 제외

문화재보호법⁹⁾에 의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에 있어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주5)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의 종류 : 아래의 것중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①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서, 조각, 공예품 등
 - ②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 ③ 기념물 : 패총, 고분, 성지(城址), 궁지(宮址), 요지(窯)

址),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

④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

• 문화재의 지정

- ① 국가지정문화재
- ② 시·도지정문화재

(2) 복합구조건물의 내용년수

해당구조, 건축시기, 용도가 다른 건물의 내용년수와 감가율은 건물 연면적에 대하여 합산평균한 감가율을 산출 적용하되 복합된 구조, 용도 및 중·개축부분이 전제건물(중·개축 포함)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20% 이하이면 무시한다. 다만, 복합구조건물중 한쪽의 구조가 간이목조, 간이목골목탈조, 간이철재최파이프조, 컨테이너일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년수 및 감가율을 적용한다.

<산출예시>

구조	용도	경년감가율	경과년수	총감가율	면적(m ²)	가중치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1.07%	20	21.4%	200	4280
벽돌조	여관	1.60%	10	16.0%	100	1600
계					300	5880
평균감가율	$5880 \div 300 =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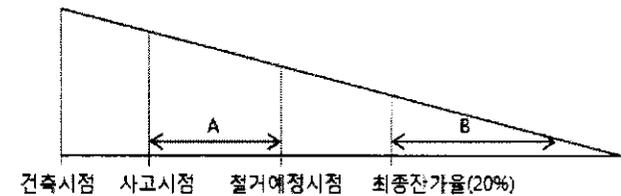
※ 가 중 치 = 총감가율×면적
 평균감가율 = 가중치÷면적합계

(3) 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철거건물의 평가

퇴거·철거가 결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년수, 수익력에 있어서도 거의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최종잔가율 20%로 보고 사고시점에서 철거예정시점까지의 경과년수를 해당건물의 잔여기간으로 보아 동 잔가율을 최종잔가율과 합산 평가한다.



※ A = 잔여기간의 잔가율(잔여기간 x 경년감가율)

B = 최종잔가율(20%)

· 보험가액 = 재조달가액 × [잔여기간(사고시점에서 철거 예정시점의 기간) x 경년감가율 + 최종잔가율(B)]

· 잔여기간의 잔가율(A) 산정시 적용되는 경년감가율은

【별표1】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기준을 적용한다.

(5) 모델하우스의 평가

모델하우스의 추정내용년수는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년감가율은 월할로 안분 평가하며 최종잔가율은 재활용도를 감안하여 20%로 한다. 다만, 상용주택 전시장이나 상설주택문화관 등 그 구조를 유지한채 장기사용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내부를 수시로 개조하는 인테리어 부분과 상설구조물을 구분평가한다. 인테리어의 내용년수는 해당사업 전시기간으로 하고 상설구조물의 추정내용년수는 【별표1】 건물 구조별 내용년수를 따른다. 다만, 상설 모델하우스가 아닌 경우는 가설 존치기간을 당해사고시점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IV. 건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별표1】 건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제3편 구축물의 평가

I. 구축물의 정의 및 범위

1. 구축물의 정의

구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중 건물로 규정된 이외의 제반 건조물을 말한다.

2. 구축물의 범위

철도·케도사업용, 발전·송배전용, 방송·무선통신용, 경기장·유원지용 건조물 및 정원, 포장도로, 선전탑 등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II. 구축물의 평가

1. 평가방법

(1) 건물의 평가방법과 같으며, 평가대상 구축물과 동일한 구조, 규모, 용도 및 질로 재설치하는데 필요한 재구축비를 산출한다.

(2) 구축물은 구조별, 용도별로 다종다양하므로 직접적으로 피보험자측의 설비관련자료(도면, 견적서)를 기초로 재구축

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대규모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조사시 구조 및 재료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측된 치수를 근거로 산출된 물량에 재료비는 시중가격을,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3) 특수한 건축물부위는 전문관련업자의 견적서를 토대로 한다.

III. 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VI. 건축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별표2] 건축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제4편 시설의 평가

I. 시설의 정의 및 범위

1. 시설의 정의

시설이란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 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II. 시설의 평가

1. 평가방법

- (1) 건물의 평가방법과 같으며, 평가대상 시설물과 동일한 구조, 규모, 용도 및 질로 재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시설비를 산출한다.
- (2) 시설은 구조별, 업종별로 다종다양하므로 직접적으로 피보험자측의 시설관련자료(도면, 견적서)를 기초로 재시설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대규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조사시 내외부 마감재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측된 치수를 근거로 산출된 물량

에 재료비는 시중가격을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3) 특수한 시설부위는 전문관련업자의 견적서를 토대로 한다.

III. 시설의 감가율 적용

1. 시설의 추정내용년수 및 감가율 산출

시설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별표3】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를 적용한다. 단, 숙박 및 음식점중 【별표4】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년수 8년, 최종잔가율 20%로 하고 경년감가율은 매년 10.00%로 한다.

2. 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손해사정상 유의사항

(1) 시설의 개·보수와 경과년수 적용

- 가. 재조달가액의 50% 미만을 개·보수하였을 경우 : 최초 시설년도 기준
- 나. 재조달가액의 50% ~ 80%를 개·보수하였을 경우 : 최초 시설년도로부터의 경과년수와 개·보수후 경과년수를 합산, 평균한다.
- 다.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일 때 : 개·보수시점을 기준한다.

제5편 기계장치의 평가

I. 기계장치의 정의 및 분류

1. 기계장치의 정의

광의의 기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인간에게 유용한 장치를 뜻하며 미싱, 발전기, 인쇄기, 선반 등이 그 일례이다. 또한 장치라 함은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물리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을 뜻하고 석유정제장치, 석유화학장치, 약품제조장치 등의 이른바 “Plant류”도 이에 포함된다. 기계 및 장치중 “장치”에 대해서는 정형적인 것은 비교적 적으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가도 개개의 대상물건마다 개별적 조건을 고려하여 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공통적 평가방법의 설명과 평가상의 기준치 또는 표준치 등의 설정은 극히 곤란하다.

2. 기계의 분류

기계를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력기계(원동기)

에너지원(석탄, 석유, 태양열, 증력 등)이 지닌 에너지를

동력, 전력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계(예: 보일러, 내연기관, 증기기관, 터빈, 전동기, 발전기 등)

(2) 작업기계

원동기에서 받은 에너지에 의해 작업을 하는 기계(예: 금속공작기계, 섬유기계, 제재기계, 목공기계, 하역운반기계 등)

(3) 측정기계

정보원, 분석대상에서 필요한 측정치를 도출하여 표시하는 기계(예: 재료시험기, 측정기 등)

(4) 지능기계

다수의 Data에서 올바른 논리와 계산에 의해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계(예: 전자계산기, 수치제어장치 등)

상기 4가지 분류중 공장동에 있어서 통상 기계설비의 주류를 형성하는 것은 (2) 작업기계이다. 그밖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조기계, 운반기계 등으로 대별하는 분류법도 있다.

3. 손해사정의 유의사항

(1) 건물의 내외

기계기구류에 있어서도 건물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용건물을 명시하고, 옥외에 있는 경우에는 옥외설비장치로써 부보하게 된다. 따라서 2동이상의 건물에 걸쳐있거나 또는 옥외에 나와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로부터 최초의 접속부분까지라고 해석되는 것이 상식이다.

단, 기계의 특성상 건물의 내외에 걸쳐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인 기계는 예외로 한다.(예 : 소각로의 굴뚝, 흡진기의 흡진장치 및 세정장치, 냉각기의 응축장치 등)

(2) 설치비용과 운임

전술한 대로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하여 산출하나 재조달가액에서 설치현장까지의 운임, 설치비용이 포함된다.

(3) 특히 문제가 되기 쉬운 사항

① 동력배선

동력배선중 건물의 구조체에 설치된 동력배선은 건물로 평가하며 건물의 구조체(분전반 또는 콘센트)에서 별도로 분기되는 배선은 기계로 본다.

② 기계기구류의 저장품 등

기계기구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생산라인중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상사용을 위한 단기간의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저장 또는 보관하는 것은 저장품으로서 별도의 목적물로 분리하여야 하며, 사용중이던 톱날, 바이트 등은 소모 공·기구로 본다.

③ 소모품

일상사용하고 있는 잉크, 연료, 기계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유 등의 소모품은 기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변압기내의 절연유(絶緣油)와 같이 기계의 일부가 되는 것은 기계의 일부로 본다.

④ 촉매, 냉매, 열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화학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기계장치안에서 화학반응을 촉진(촉매) 또는 온도변화의 매체(냉매, 열매)가 되므로 본래 부자재로 다루어지며 별도의 목적물로 본다.

다만, 생산라인중에 있는 것은 기계장치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의도가 계약상 명확할 경우, 기계장치가액에 가산해서 평가한다. 또 이러한 것들이 기계장치의 일부를 이루고, 이것이 없으

면 기계장치의 효용이 없게 되는 것은(냉동기중 암모니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냉매) 부자재이지만 명기하지 않아도 기계장치에 포함된다.

II. 평가상의 특징

기계는 건물 및 가재와 같이 계속사용재이므로 그 보험가액은 제조달가액에서 사용손모 및 자연열화 등에 상응한 감가공제(경제적 진부화에 의한 감가는 제외)를 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기계의 제조달가액이란 동일한 용도, 구조, 형식, 시방능력의 기계를 제조달하는데 필요한 가액으로서 기계본체의 가격외에 각종부속품, 예비품, 치구 등의 가격 및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한, 경제적 진부화에 의한 감가관 보다 고성능, 고정도(高精度) 기계의 출현으로 인한 현존 기계의 상대적 가치감소 경향을 말한다.

보험가액(현재가액) = 제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기계는 그 종류, 용도, 구조, 형식, 시방 등이 극히 다양하므로 실제평가에 있어서는 우선 당해기계 가 어떤 종류 및 용도의 기계인가를 알아보고 Maker명, 형식, 시방(능력, 치수, 출력, 작업속도, 정도(精度), 조작성 등을 말한다)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사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평가상 특히 주의할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방(示方)의 다원성

기계의 시방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한가지 시방만으로 그 기계의 능력 또는 가액을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컨대 인쇄기계의 능력을 보아도 인쇄방법(활판, 오프셋, 그라비아 등), 인쇄색수, 인쇄용지의 크기, 인쇄속도, 조작방법(수동, 자동, 반자동) 등에 따른 가격차가 있으며, 또한 기계본체에 각종부속품, 예비품, 치·공구 등도 본체가격과 밀접불가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것들의 장치상황 확인도 중요하다.

2. 기계의 개별가격성

일반적으로 설비가 되는 기계의 가액은 섬유, 잡화, 경기계(미싱, 카메라 등) 등과 달리 구조, 시방 등의 Maker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 포괄적인 표준시장가격의 판정이 곤란하며 Maker별 개별가격의 성격이 강하다.

3. 사용 및 유지조건 등에 의한 가격차

상기 1, 2항은 신품기계에 대한 것이나 경년기계 및 중고기계의 평가는 더욱 복잡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계는 경과년수는 물론 사용 및 유지관리조건 등에 따라 현존가액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내부에서는 기계설비의 신·중설, 대체, 폐기를 하기 때문에 개개 기계의 취득년도가 다양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III. 제조달가액의 평가

1. 평가방법

보험가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제조달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가기계의 기종, 용도, Maker명, 형식, 시방능력 등을 기계대장 또는 고장자산대장, Name Plate 등으로 조사하고 다시 한번 Maker, 상사, Dealer, 관계단체 등에 조회하여 당해기계의 거래가격을 직접 파악하는 방법이다.

(2) 전술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여러가지 병용하여 종합판단하여 추정평가한다.

가. 유사품에서의 추정

평가기계와 구조, 형식, 시방능력 등이 비교적 근사한 다른 기계의 거래(시장)가격에서 당해기계의 가액을 추정하는 방법

나. 취득가액에서의 추정

평가기계의 원시취득과 동 취득년도를 고정자산대장 등으로 파악한 후, 이것에 적당한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평가시점의 제조달가액을 환산하는 방법, 특히 중

고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기계의 제작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의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단, 수입기계의 경우 최초의 수입시 발부된 수입면장 등을 통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또 개조, 증설 등의 과정으로 기계와 관계없이 철거한 비용과 할부판매대금의 금리가 고정자산대장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다. 단위능력당 가격에서의 추정

평가기계의 출력수, 작업능력 등을 조사하여 여기에 단위능력의 평균시장가격을 곱하여 계산가액을 추정하는 방법. 특히 1점 100만원 미만의 기계, 기구, 공구는 소액의 자산으로 자산대장에 기재가 생략된 경우가 있으므로 평가시 실제로는 실태를 조사하여 가산할 필요가 있다. 기구, 공구류의 평가방법으로는 공구수, 기계대수, Unit수에 각각의 표준액을 조사하여 전체수에 걸쳐 가액을 구하는 방법 혹은 간편법으로서 기계의 평가액에 경험적 비율을 곱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2. 실무상의 참고사항

기계제조달가액의 평가방법은 전기한 대로이지만 실제문제로서 종류가 많고 구조, 성능이 복잡한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

가 아닌 자가 평가작업에 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여기서는 극히 소범위의 기계에 대해서만 평가실무상 기초와 관련 있는 기계의 시방능력의 구체적 파악방법을 참고로 제시한다.

(1) 기계의 “기종, 능력” 파악방법

가. 기계분류의 명확화

기계의 구조, 성능, 시방(능력, 치수, 기타)등의 파악에 앞서 필요한 것은 “기계”의 분류상의 지위, 즉 그 기계가 어떤 종류의 기계인지를 “세분류항목”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의 평가시에는 우선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최종제품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 기계가 그 공장에서는 무엇을 작업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용도, 재질, 형상, 치수의 부품을 제작(가공)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것에 따라 기계의 “대분류기종명”이 판명되는 셈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예를 들면 “합성수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있어서도 기계설치 전부가 합성수지 가공기계만이라고 한정할 수 없다. 금형제작용의 금속공작기계나 치·공구제작, 수리용 공작기계 등이 설치되고 있는 사례도 많다.

나. 기계능력의 파악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대상기계의 “기종”이 명확히 파악되면 다음으로는 그 기계자체의 능력을 판정한다. 기계의 능력은 기계에 따라 각각 다르다. 금속공작기계, 프레스, 섬유기계의 능력표시가 여러가지로 틀림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의 전기종에 대해 그 능력파악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그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계설비중에서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작업기계의 능력 파악방법을 참고사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금속공작기계, 목공기계, 합성수지가공기계 등 가공기계의 능력은 통상 “가공능력”에 따라 대표된다.

- 금속공작기계 보통선반, 단통연삭반 :
스윙 × 중심간 거리
(가공최대경 × 가공최대길이)
- 불반(Drilling machine) : 구멍 파는 능력(최대직경)
- 목공기계 보포 : 최대가공폭
- 합성수지가공기계 형체능력(톤) 또는 사출용량
- 인쇄기계 인쇄방법, 인쇄색수(2색, 4색 등)
- 기계프레스 가공최대압력(톤)

기계의 “현물”을 보고 가공부품의 송입구, 부품대 또는 작업대나 주축, “바이트”, 형(型) 등 주요작업 Unit 등이 판명되면 이 부분의 치수를 측정하는 것도 가공능력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기계가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현실의 작업상황을 봄으로써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공능력이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계를 구동시키는 동력의 출력(대개 전동기의 출력) 또는 당해기계의 “제품중량” 등을 조사한다. 가공능력, 주전동기출력, 제품중량의 3자가 파악되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이들중 하나만이라도 파악되면 평가작업의 개략을 전망할 수 있다.

(2) 시장가격수치

개별성이 강한 기계류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IV. 감가공제액의 산출

기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에 따른 손모 및 자연열화에 근거하여 점차적으로 감가를 해가는 것이 통상적이다. 평가시점에 있어 기계감가공제액(제조달가액×감가율)은 기업회계상 예정된 감가상각과는 상이하며, 어디까지나 경험에 비추어 실제로 감가하는 것이 통례이다.

다시말해서 구체적으로 당해기계의 성능열화도를 측정하고 주요부품, 부속품의 장치상황을 조사하고 그 감가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적 방법에 따르는 것은 실제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적용하는 감가율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추정내용년수

기업은 그 경영상 기계에 대하여 정기적 보수 및 부품, 부속품의 정비를 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그 보수비와 정비비는 기계의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점 하므로 어떤 기간 경과후에 이들 비용과 성능과의 관계 및 경영상의 요청에서 신규기계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그 기간, 즉 당해기계의 유효사용가능년수가 추정내용년수이다. 그러나 그

것이 몇 년인지는 당해기계의 생산성, 운전 및 유지관리조건, 요구되는 성능, 정도(精度) 등 각각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다. 그래서 일반기업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가동상황, 경과년수별 기계의 보유비율을 감안하여 추정내용년수를 고려한 경우 기업회계상 실용되고 있는 법정내용년수를 기초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기계·장치의 추정내용년수 산정근거

구분	감가관정요소	실무용추정내용년수
A	성능·정도·조업도·마모·부식성이 특히 높은 기계 및 업종	법정내용년수×1.2
B	성능·정도·조업도·마모·부식성이 보통인 기계 및 업종	법정내용년수×1.5
C	성능·정도·조업도·마모·부식성이 비교적 낮은 기계 및 업종	법정내용년수×2.0

주) 설치조건, 유지관리, 사용조건 등이 현저하게 나쁠 경우의 추정내용년수에 대해서는 적의 수정할 수 있다.

◎ 기계류의 추정내용년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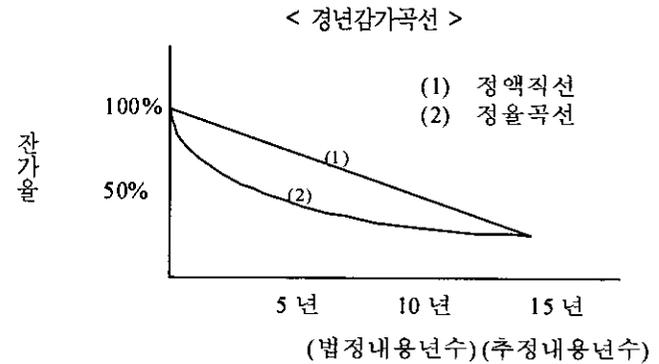
【별표5】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표 참조

2. 최종잔가율

최종잔가율이라 함은 추정내용년수를 경과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계에 대해서 처분가액의 제조달가액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최종잔가율은 20%를 적용한다.

3. 경년감가방식

기계의 사용손모, 자연소모에 따른 감가 이른바 경년감가방식(가치체감방식)에 대해서는 물리적 손모를 중시하면 정액직선의 경향이 되고, 시장가치성을 중시하면 기업회계상 통상 이용되는 정율곡선의 경향이 된다.



특히 세법에서는 정액법(직선식) 또는 정율법(곡선식)의 어느 것이라도 채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계의 사용

가치도 실무상 편의성을 고려하여 건물과 같이 정액법을 사용한다.

정액법에 의한 경년감가율 계산식

- 경년감가율

$$= \frac{\text{제조달가액 } 100\% - \text{최종잔가액 } 20\%}{\text{추정내용년수}}$$

- 감 가 율 = 경년감가율 × 경과년수
- 감가공제액 = 제조달가액 × 감가율

4. 잔가율의 수정

전술의 정액법 감가방식에 따른 잔가율은 제조달가액의 30% 이하가 되더라도 현재 기계로서 생산계열중에 가동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계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30%로 수정한다. 다만, 운전사용조건, 유지관리조건이 양호한 기계 및 개조, 대수리를 한 기계에 대해서는 그 실태에 따라 제조달가액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적의수정할 수 있다.

5. 손해사정시의 유의사항

(1) 중고구입기계의 평가

- ① 제작년도를 알 수 있을 경우 : 당해기계의 신제품제조달가액에 경과기간을 감가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 ② 제작년도를 알 수 없을 경우 : 기계의 상태에 따라 신제품제조달가액 30% ~ 50% 범위내에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 ③ 중고품가격이 신제품제조달가액보다 비싼 경우 : 신제품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 ④ 중고품가격이 신제품제조달가액을 감가상각한 것보다 낮은 경우 : 시중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2) 신제품구입기계인 경우에도 신제품제조달가액을 감가상각한 가액이 시중중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중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3) 기계의 내용년수를 적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업종별로 적용되되 생산공정이 분리되는 경우 당해공정별 각각 해당업종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4) 신구교환공제에 대한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수리비용
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제적 가치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아래의 수리비용
가. 해체비
나. 재조립비
다. 검사비
라. 운반비(단, 검사비, 운반비는 통상 공과잡비에 포함되나 별도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 손해액 평가방법
가. 수리비용에 따른 해당 공과잡비의 비율을 산출함
나. 감가상각을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는 수리비용의 분류
다.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수리비에 대하여 가.항에서 산출한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감가상각한 금액 인정
라.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수리비에 대하여 가.항에서 산출한 공과잡비를 포함한 금액 인정
마. 검사비, 운반비 자체가 공과잡비 항목이므로 실비용 인정

-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둘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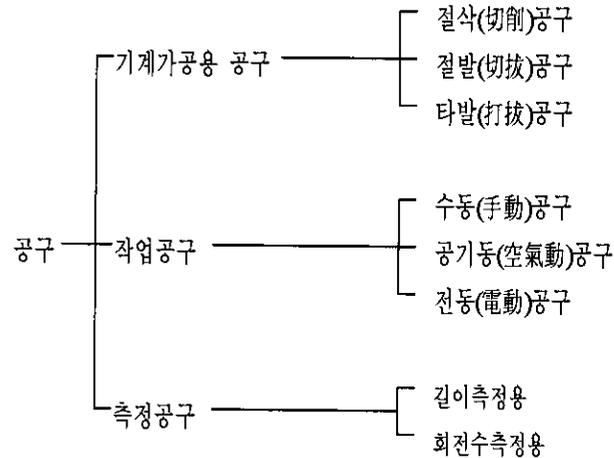
V. 기계 및 장치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별표3】 업종별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제6편 공·기구의 평가

I. 공·기구의 정의 및 범위

1. 공구는 작업과정에서 주된 기계의 보조구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그 용도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2. 기구는 기계중 구조가 간편한 것 또는 도구일반을 표시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측정기구류가 이에 해당된다. 연구소, 영업소내의 실험기구, 측정기구는 집기비품으로 평가하며 공장실험실 및 작업장내의 시험기구, 측정기구는 공·기구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3. 원본, 모형, 틀 등

주형, 금형, 지형, 목형, Film 등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시에는 우선 그 점에 대해 계약자의 의향을 구하고 명기여부에 따라 그것에 상응한 평가를 한다. 또 주형, 금형, 지형, 목형, Film 등은 거의 모두 특수품이며 사용빈도가 업종, 기업에 따라 다르며 개개의 추후 재활용도가 미지수인 점과 진부화된 것이 오래 보존되어 있는 일이 많으므로 평가상 주의를 요한다.

II. 공·기구의 추정내용년수

공·기구의 감가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항목을 적용하되 그것이 어려운 경우 III.을 적용할 수 있다.

공·기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세 목	추정내용년수(년)	경년감가율
유압, 전동, 수동 공기구와 금속제의 공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10.00%
금형, 주형 및 금속제모형의 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16.00%
목형, 지형, 및 비금속제 모형의 틀, 필름, 활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20.00%

III. 감가공제

공·기구에 대해서도 제조달가액에서 사용에 따른 손모 및 경과년수 등에 상응한 감가공제를 하는 것이 통상이나, 공·기구 중 제조달가액이 소액이어서 개별구입 시기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수시로 대체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일반적으로 개개 공·기구의 신진대체에 따른 효용 지속성을 고려할 경우 전체 공·기구에 제조달가액(100%)의 20%~40%로 감가기준을 볼 수 있다.

다만, 주형 및 금형, 지형, 목형, Film 등 특수품은 일반적으로 취득 및 제작년월의 부정확성과 업종, 기업에 따라 사용빈도가 일정치 않은 점, 진부화된 제외품의 보관문제, 개개의 추후 재활용도가 미지수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전체 제조달가액(100%)의 80%까지를 감가기준으로 볼 수 있다.

IV. 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7편 영업용 집기비품의 평가

I. 영업용 집기비품의 정의 및 범위

영업용 집기비품이란 일반적으로 직업상의 필요에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소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영업용 집기비품으로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기계기구류라고 호칭되고 있는 것중, 예컨대 의료용 기계라든지 세탁소의 프레스 기계와 같이 "기계"라고 호칭되어도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가동,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 또는 서비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는 집기비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소모품류는 영업용에 사용되는 한 영업용 집기비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지류, 끈류, 라벨류와 같은 포장자재로서 최종적인 상품의 일부로 판매되는 것은 상품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화관내의 Film,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있는 의약품, 인쇄공장에 있는 활자, 사진판, 연판, 동판, 지형, 설계사무소에 있는 설계도, 디자이너 점포 등에 있는 디자인, 택시회사의 구내에 있는 연료용 개솔린 등은 어느 것이나 집기비품으로 보지 않는다.

3. 보통 가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등 종류의 도구라도 용도에 따라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집기비품으로 취급한다. 예컨대 보통은 가재인 이불류도 여관등에서 영업용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집기비품이다.

4. 장부, 전표, 카드 등은 집기비품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들은 객관적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것이므로 명기하지 않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기한 경우에도 통상은 직접 재제작비용이 보험가액이 된다.

II. 평가방법

집기비품은 건물, 기계, 가재와 같이 계속사용제이기 때문에 그 보험가액은 제조달가액에서 사용에 따른 손모 및 경과년수 등에 상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이것을 평가한다.

보험가액(현재가액) = 제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1. 제조달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집기비품에 대한 평가는 기계와 동일하게 직접 개개에 대해 조사하는 외에 계약자의 자산대장에서 그 수량, 취득가격을 파악하고 그것에 상각자산 대상외의 소액자산 및 소모품의 재고를 더해서 제조달가액을 파악한다.

나. 취득년도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자산대장 등에 평가대상 집기비품의 원시취득가액으로 동 취득년도를 보고 이것에 물가지수를 사용해 평가시점의 제조달가액에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 실제 평가에 있어서 그 종류, 수량이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그 가격을 조사하는 일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 등에 따라 개괄적, 총체적으로 파악한다.

- ① 일정면적(실(室), 면적단위당)에 수용된 집기비품의 수량, 가액으로 전체가액을 추정평가하는 방법
- ② 종업원 1인이 사용하고 있는 집기비품의 수량,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액을 추정평가하는 방법
- ③ 동일규격의 집기비품이 복수인 때에는 1대의 집기비품 가액과 그것을 조작가동하는데 필요한 기구, 비품류의 가액을 산출한 후 당해 집기비품의 대수를 곱하여 전체가액을 파악하는 방법

2. 중고구입 집기비품의 평가방법

(1) 제작년도를 알 수 있을 경우 : 당해 집기비품의 신제품 제조달가액에 경과기간을 감가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 (2) 제작년도를 알 수 없을 경우 : 집기비품의 상태에 따라 신품제조달가액 30%~50% 범위내에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 (3) 중고품가격이 신품제조달가액보다 비싼 경우 : 신품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 (4) 중고품가격이 신품제조달가액을 감가상각한 것보다 낮은 경우 : 시중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 (5) 신품구입 집기비품인 경우에도 신품제조달가액을 감가상각한 가액이 시중중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중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III. 감가공제

집기비품에 대해서도 제조달가액에서 사용에 따른 손모 및 경과년수 등에 상응한 감액공제를 하는 것이 통상이다. 집기비품은 내구소비재적인 집기와 단기소비재적인 비품, 소모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개의 감가율이 각가지이지만 개괄적으로 내용년수가 짧은 것이 많은지 또 영업활동상 신진대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 등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집기비품 전체의 제조달가액(100%)의 20%~40%로 감가기준을 볼 수 있다. 특히 집기비품의 최종잔가율은 20%이다.

IV. 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중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V. 영업용 집기비품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별표3] 업종별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제8편 가재의 평가

I. 가재의 정의 및 범위

가재라 함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정생활용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가구,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량품, 연료,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포괄함을 말한다. 따라서 거주자(피보험자)의 직종에 따라서 어떤 물품이 가재인가의 판정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일반 사회통념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가재의 평가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일반적 사항

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건에 대해 생긴 직접손해를 담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험의 목적을 소유하는 자의 소유자 이익이 피보험이익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피보험자 본인의 소유물만이 부보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가구주인 때에는 같은 가구에 속하는 친족 또는 사용인의 소유물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2. 기타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수용장소

수용장소는 원칙적으로 건물내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전용부분의 베란다 및 치마끝 등에 놓여있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옥상 및 담장내에 수용되어 있는 가재도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영업용 집기비품과의 관계

같은 책상이라도 가정생활에 사용되는 것은 가재이며,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영업용 집기비품이다. 예컨대, 여관등에서 영업용으로서 사용되는 침구류는 영업용 집기비품이다.

(3) 영업용 집기비품에 유사한 것

학자의 서적이든가 기생의 거문고, 의류 등은 영업용 집기비품으로서의 색채가 강하나 통상 가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재로 처리된다. 그러나, 농가의 경운기, 어망 등은 금액도 고액이므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4) 기계·기구

가정용 전기기구류가 가재인 것은 당연하나 가내공업적

프레스와 재봉틀이 몇대라도 놓여있는 경우에는 가재로 보기가 어려우며 별도의 기계, 기구로 부보할 필요가 있다.

(5) 동식물

약관상 별다른 규정은 없으나 생물은 이른바 가재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손해의 발생방법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재라고는 해석되지 않고 화분, 수족관은 가재에 포함한다.

(6) 서화, 고서류, 골동품 등의 감가상각 제외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가치를 지닌 개인소장 서화, 고서류, 골동품에 대하여는 공인감정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7) 기타

- ① 안경, 틀니, 콘택트렌즈, 의수족 등은 신체의 일부이지만 분리상태에서 손해발생시에는 가재도구로 평가한다.
- ② 은수저의 경우 사용시는 가재에 포함하며, 보관시는 귀금속에 해당한다.

II. 평가방법

가재는 건물과 같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

건의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손모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 평가시에는 보험가액의 성격(법률상의 요청), 재조달가액(신품의 재취득가액)에서 적절한 감가공제를 하고 평가시의 현재가액을 산출하되 객관성 있는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자의적이거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해서는 안된다.

단, 가계성보험(보험목적물이 가재도구일 경우) 사고중, 일정한 금액 이하의 사고의 경우 간이평가기준(평가방법 제3항)을 이용할 수 있다.

1. 평가의 기초적 사항

가재는 가족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가족의 구성내용이 그대로 가재내용에 반영된다. 따라서 가재의 평가는 우선 대상가족의 가족구성 및 생활수준 등 실태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 ① 가족의 구성인원
- ② 가족의 소득수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외에도 가족의 생활을 반영하는 가재는 다종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가재 상호간에는 어떤 종류의 균형이 있으며, 그것이 생활용품인 이상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 가정에 있는 것이라도 수량, 품질은 특별히 가족인원별, 종류별의 구성이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다.

2. 가재의 감가공제

가재에 대해서도 재조달가액에서 사용에 따른 손모 및 경과 연수 등에 상응한 감가공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건물, 기계설비 등 계속사용재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가재는 그 종류가 극히 잡다하기 때문에 개개의 가재사용빈도, 사용방법의 적부(適否), 보유수의 다과 등에 따른 내구성이 상위(相違)하기 때문에 상세한 감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가재 전체의 포괄적인 감가기준은 신혼가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개개 가재의 신진대사에 따른 효용의 지속성을 고려할 경우 전 가재의 재조달가액(100%)의 25%를 감가기준으로 본다.

3.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기준

(1)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기준이란 가계성 재물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인 가재의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여 평가하지 않고 보험가액의 결정에 영향이 큰 두가지 항목, 즉, 가족구성원수, 월평균소득(세대주)을 조사하여 보험가액을 약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이평가기준 적용대상

가재도구 보험가액의 50% 미만 손해액의 사고 처리에 적용하며 명기 가재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표 이용방법

- ① 현장 사고조사시 사고계약자의 가족구성원수(계약자 본인 포함), 월평균소득(세대주의 연평균 소득을 월로 환산한 금액)을 파악하여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표상에 기재한다. 이중 조사자가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계약자 가재의 수가 많고 고가품들일 경우 '상'으로 표시하고, 보통일 경우 '중', 가재수가 적고 저가품들일 경우 '하'로 평가한다.
- ② 기준액란은 4.항목별 기준액 및 조정계수표중 (1) 항목별 기준액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기준액을 기재한다.
- ③ 조정계수란에는 4.항목별 기준액 및 조정계수표중 (2) 월평균 소득금액별 조정계수를 참조하여 해당 조정계수를 찾아 기입한다.
- ④ 보험가액은 각 해당란 기준액, 조정계수, 가중치 등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산출한 후 각 해당란을 합하면 계약자의 가재 전체에 대한 보험가액이 된다.

< 산출예 >

$$\text{보험가액} = (\text{월평균소득 기준액} \times \text{소득금액별 조정계수} \times 60\%) + (\text{가족구성원수 기준액} \times 40\%)$$

※ 간이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가계 명세서상에 가채를 실사하여 직접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항목별 기준액 및 조정계수표

(1) 항목별 기준액(금액단위 : 만원)

가. 월평균소득

월평균 소득	기준액
72미만	1,095
72이상~143미만	1,598
143이상~215미만	2,482
215이상~287미만	3,204
287이상~358미만	3,821
358이상~430미만	4,246
430이상~501미만	5,008
501이상~573미만	5,190
573이상~716미만	6,616
716이상	7,488

나. 가족구성원수

가족 구성원수	기준액
1인	1,233
2인	2,509
3인	3,269
4인	3,955
5인	4,275
6인 이상	4,606

(2) 월평균 소득금액별 조정계수(금액단위 : 만원)

월평균소득	조정계수
72미만	상:1.3, 중:1.0, 하: 0.7
72이상~143미만	
143이상~215미만	
215이상~287미만	상:1.4, 중:1.0, 하: 0.7
287이상~358미만	
358이상~430미만	상:1.2, 중:1.0, 하: 0.8
430이상~501미만	
501이상~573미만	
573이상~716미만	상:1.5, 중:1.0, 하: 0.8
716이상	

(3) 항목별 가중치

구분	가중치
월평균소득	60%
가족구성원수	40%

제9편 차량 및 운반구의 평가

Ⅲ. 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Ⅳ. 가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별표6】 가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명기된 차량은 자동차보상 실무지침에 따른다. 단, 자동차보험 내용년수에 명기되지 아니한 차량은 【별표3】에 따른다.

【별표3】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제10편 재고자산의 평가

I. 재고자산의 정의 및 분류

1. 재고자산의 정의

재고자산이라 함은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2. 재고자산의 분류

(1) 원·부재료

원재료, 부재료, 매입부분품 등을 말한다.

(2)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을 말한다.

(3) 반제품

자가제조한 중간제품을 말한다.

(4)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을 말한다.

(5)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동산을 말한다.

(6) 저장품

저장품이라 함은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소모품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예 : 가구공장의 연마포, 연마지)

(7) 기타의 재고자산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재고자산을 말한다.

II. 재고자산의 평가

1. 평가의 특성

견본이나 전시품 등 계속사용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제조달가액이 평가의 기준이 되며 교환가치(시장가치)가 평가의 한도가 되므로 통상 감가라는 요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재고자산의 보험가액 = 제조달가액

2. 평가의 범위

가. 소유권 관계

보험계약에서 특별히 명기하지 않으면 보험의 목적은 자기소유분에 한정되므로 수탁품, 예수품 등의 타인 소유분은 원칙적으로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한다.

나. 판매·일반관리비 및 미실현비용(이익)의 제외

재고자산은 교환재라는 특성으로 인해 유통과정상 각종 경비 및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손해보상의 원칙에 의해 보험가액은 보험의 목적의 때와 장소에 있어서의 제조달가액 즉, 채취득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기지출된 판매·일반관리비 및 미실현비용(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3. 평가방법

(1) 상품

가. 상품의 범주

상품이란 건물, 가재, 영업용 집기 등의 계속사용재와는 달리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실질적 가치를 지닌 동산으로서 포장용품, 경품, 견본, 전시품, 진열품 등을

포함한다.

나. 상품에 대한 평가의 특색

① 재매입가액이 기준이 된다.

상품은 교환재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손해보험의 손해보상의 원칙에 지배받는 관계상 판매·일반관리비 등 미실현비용 및 이익을 포함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② 유통과정의 단계상 가격차가 발생한다.

상품은 일반적으로 생산업자 ⇒ 도매상 ⇒ 소매상의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 게 이르게 되는데 유통과정의 단계상 가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평가대상이 되는 개별상품의 유통과정이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재매입가액이며, 판매·일반관리비 및 다음단계로 옮겨갈 때의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각종 상품의 평가

① 일반상품

일반상품의 보험가액은 재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견본, 전시품, 진열품

계속사용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견본, 전시품, 진열품 등은 제조달가액에 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보험가액 = 제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③ 사장품(Dead Stock)

일반상품 중에는 매진품, 재고품, 셋트제품의 우수리품, 유행이 지난 상품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 소위 "사장품"에 대해서는 상품가치가 현저히 낮아져 있으므로 본래의 취급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며 "사장품"으로서의 시장가격에 의하거나 혹은 별도의 할인을 고려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2) 제품, 반제품, 재공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의 평가기준은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해당 제조달가액 즉, 재생산원가이며, 이는 투입재료비에 공정별로 부가된 가공비(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보험가액(현재가액) = 제조달가액

※ 제조달가액 = 제조원가(재생산원가)

(3) 원·부재료 및 저장품

원·부재료 및 저장품은 외부로부터 매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보험가액의 평가는 일반상품의 경우와 동일하다. 한편, 원·부재료 및 저장품을 자가제조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품의 평가방법과 마찬가지로 제조원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가. 외부로부터 매입한 경우

○ 보험가액(현재가액) = 제조달가액

○ 제조달가액 = 재매입가액(순매입액+매입부대비용)

나. 자가제조한 경우

○ 보험가액(현재가액) = 제조달가액

○ 제조달가액 = 제조원가(교환가치를 한도로 함)

부 칙

이 기준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 백>

<여 백>

별 표

본 별표의 내용년수 및 감가율 등은 세법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확인 : 삼일회계법인, 2009)

<여 백>

【별표1】 건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건물용도별 건물구조별	우기 이외의 건물		창고, 공장		변전소, 발전소, 정거장, 정류장, 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냉장창고, 화학공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내용년수	경년감가율	내용년수	경년감가율	내용년수	경년감가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75	1.07%	57	1.40%	38	2.11%
철골조/석조/연와석조	60	1.33%	45	1.78%	30	2.67%
콘크리트조/연와조/ 벽돌조/보강블럭조/ 목조(한식, 통나무)	50	1.60%	38	2.11%	25	3.20%
블록조/경량철골조/ 단열판넬조/목조(절충식)	40	2.00%	30	2.67%	20	4.00%
토조/토벽조/목골몰탈조	30	2.67%	23	3.48%	15	5.33%
간이목조/간이목골몰탈조/ 간이철재외피이프조/ 컨테이너	10	8.00%	7	11.43%	7	11.43%

- 주) 1. 추정내용년수는 법정내용년수에 1.5배~2.0배 수정한 것임
2.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3. 화학공장이라 함은 염, 칠레초석 기타 조해성(潮解性)이 있는 고체를 상시 장치하기 위한 건물과 극약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하기 쉬운 건물을 말한다.
 4.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인 기둥, 바닥판, 지붕틀, 가로재 등이 H형강구조의 건물을 철골조라 하며, 그의 C형강등 경량형강과 단열판넬을 사용한 건물은 경량철골조 및 단열판넬조라 한다.

[별표2] 건축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구축물용도별 구축물구조별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하수도, 골목, 경관장, 포장도로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	
	내용 년수	경년 감가율	내용 년수	경년 감가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75	1.07%	38	2.11%
철골조/석조/연와석조	60	1.33%	30	2.67%
콘크리트조/연와조/ 벽돌조/보강블럭조	45	1.78%	23	3.48%
블록조/경량철골조/ 단열판벽조/목조	38	2.11%	18	4.45%
토조/토벽조/목골목탈조	30	2.67%	15	5.33%

- 주) 1. 추정내용년수는 법정내용년수에 1.5배~2.0배 수정한 것임
 2. 별표2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별표3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3]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시설,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 및 운반구)**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추정내용 년수	경년 감가율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작물 재배업/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과수	8	10.00%		
			과수	30	2.67%		
	02	임업	임업	8	10.00%		
B 광업	03	어업	어로 어업/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0	8.00%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0	8.00%	
			06	금속 광업	철 광업/비철금속 광업	15	5.33%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토사석 광업/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15	5.33%
C 제조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8	10.00%		
			10	식료품 제조업	12	6.67%	
			11	음료 제조업	알콜음료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2	6.67%
12	담배 제조업	담배 제조업	15	5.33%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추정내용 년수	정년 감가율
C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2	6.67%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0	8.00%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편조 의복 제조업/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0	8.00%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신발 및 신발부부품 제조업	12	6.67%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151) 중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	10	8.00%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151) 중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	10	8.00%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제재 및 목재 가공업/ 나무제품 제조업/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2	6.67%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제조업	15	5.33%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	10	8.00%
	19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연탄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10	8.0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기초화학물질 제조업/합성 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 조업/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10	8.0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살충제 및 기타농약제조업(2041)	6	13.33%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추정내용 년수	정년 감가율
C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6	13.33%
			고무제품 및 플라 스틱제품 제조업	12	6.67%
	22	고무제품 및 플라 스틱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6.67%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시멘트, 석회, 플라 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기 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6.6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	10	8.00%
			1차 철강 제조업/1차 비철 금속 제조업/금속 주조업	15	5.33%
	24	1차 금속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1차 비철 금속 제조업/금속 주조업	15	5.33%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5	5.33%
			반도체 제조업/전자부품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6	13.33%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3)	6	13.33%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	6.67%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공학기 기제외/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12	6.67%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 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철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0	8.00%	
28	전기장비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 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철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0	8.00%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추정내용 년수	경년 감가율
C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2	6.67%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부품 제조업	10	8.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철도 장비 제조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	6.67%
	32	가구 제조업	가구 제조업	12	6.67%
	33	기타 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악기 제조업/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구 제조업/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12	6.67%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업/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0	2.67%
	36	수도사업	수도사업	30	2.67%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2	6.67%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 처리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2	6.67%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2	6.67%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토목 건설업	10	8.00%
	42	전문직별 공사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건설설비 설치 공사업/전기 및 통신 공사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건설장비 운영업	10	8.00%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10	8.00%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추정내용 년수	경년 감가율
G 도매 및 소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상품 중개업/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가정용품 도매업/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기타 전문 도매업/상품 종합 도매업	10	8.00%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 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정보통신장비 소매업/섬유, 위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기타 가정용품 소매업/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연료 소매업/기타 상품 소매업/무점포 소매업	10	8.00%
H 운수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운송업/육상 여객 운송업/도로 화물 운송업/소화물 전문 운송업/파이프 라인 운송업	8	10.00%
			철도운송업	24	3.33%
	50	수상 운송업	해상 운송업/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15	5.33%
			외항운송업(5011) 중 외항 화물운송업(50112)	24	3.33%
	51	항공 운송업	정기 항공 운송업/부정기 항공 운송업	15	5.33%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12	6.67%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숙박시설 운영업/기타 숙박업	10	8.00%
	56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0	8.0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58	출판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8.00%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10	8.00%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추정내용 년수	경년 감가율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60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10	8.00%
	61	통신업	우편업/전기통신업	10	8.00%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	8.00%
	63	정보서비스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기타 정보 서비스업	10	8.00%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은행 및 저축기관/투자기관/기타 금융업	8	10.00%
	65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재 보험업/연금 및 공제업	8	10.00%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 서비스업/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8	10.00%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10	8.00%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운송장비 임대업/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무형재산권 임대업	6	13.33%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8	10.00%
	71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광고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8	10.00%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	10.00%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전문디자인업/사전 촬영 및 처리업/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10.00%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추정내용 년수	경년 감가율
N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조정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8	10.00%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경비, 경호 및 탐정업/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8	10.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외무 및 국방 행정/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사회보장 행정	10	8.00%
P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중등 교육기관/고등 교육기관/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학/외국인학교 및 대학/일반 교습 학원/기타 교육기관/교육지원 서비스업	8	10.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병원/의원/공중 보건 의료업/기타 보건업	8	10.00%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	10.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도서관, 사적지 및 유산 여가관련 서비스업	8	10.00%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	10.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산업 및 전문가 단체/노동 조합/기타 협회 및 단체	10	8.00%
	95	수리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8	10.00%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8	10.00%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추정내용 년수	경년 감가율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가구내 고용활동/	8	10.00%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8	10.00%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10	8.00%
시험연구용 자산		건물부속설비, 건축물, 기계장치		10	8.00%
		평화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구, 기타설비		6	13.33%

※ 시험연구용자산의 범위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별표4】 유흥음식점의 종류

분류	내용	추정내용 년수	경년 감가율
단란주점영업점 및 유흥주점영업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호(식물점영업) 다(단란주점영업) 및 라(유흥주점영업)	8	10%
기타	상기에 준하는업소	8	10%

[별표5]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표

(시설,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 및 운반구)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법정내용년수	수정급별	수정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작물 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5년 (4~6년)	B	8	
			과수	20년 (15~25년)	B	30	
			임업	5년 (4~6년)	B	8	
	02	임업	임업	5년 (4~6년)	B	8	
	03	어업	어로 어업/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0년 (8~12년)		10	
B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석탄 광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5년 (4~6년)	C	10	
	06	금속 광업	철 광업/비철금속 광업	10년 (8~12년)	B	15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토사석 광업/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10년 (8~12년)	B	15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5년 (4~6년)	B	8	
C 제조업	10	식품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 제품 제조업/기타 식품 제조업/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10년 (8~12년)	A	12	
			음료 제조업	알콜음료 제조업/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0년 (8~12년)	A	12
			담배 제조업	담배 제조업	12년 (9~15년)	A	15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법정내용년수	수정급별	수정
C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0년 (8~12년)	A	1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8년 (6~10년)	A	10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편조 의복 제조업/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8년 (6~10년)	A	1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년 (8~12년)	A	12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151) 중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	8년 (6~10년)	A	10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151) 중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	10년 (8~12년)	A	12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제재 및 목재 가공업/나무제품 제조업/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0년 (8~12년)	A	12
			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년 (8~12년)	B	15
	17	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판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제조업	10년 (8~12년)	B	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기록매체 복제업	5년 (4~6년)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기록매체 복제업	5년 (4~6년)	C	10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연탄 제조업/석유 정제품 제조업	8년 (6~10년)	A	10
19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연탄 제조업/석유 정제품 제조업	8년 (6~10년)	A	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기초화학물질 제조업/합성 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기타 화학제품 제조업/화학섬유 제조업	8년 (6~10년)	A	1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기초화학물질 제조업/합성 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기타 화학제품 제조업/화학섬유 제조업	8년 (6~10년)	A	1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살충제 및 기타농약제조업(2041)	5년 (4~6년)	A	6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법정내용 년수	수정 급별	수정
C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초 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5년 (4~6년)	A	6
	22	고무제품 및 플라 스틱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년 (8~12년)	A	1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시멘트, 석회, 플라 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기 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년 (8~12년)	A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	5년 (4~6년)	C	10
	24	1차 금속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1차 비철 금속 제조업/금속 주조업	10년 (8~12년)	B	15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0년 (8~12년)	B	15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전자부품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5년 (4~6년)	A	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3)	5년 (4~6년)	A	6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공학기 기제외/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10년 (8~12년)	A	12	
28	전기장비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 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0년 (8~12년)		10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법정내용 년수	수정 급별	수정
C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0년 (8~12년)	A	1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10년 (8~12년)		1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철도 장비 제조업/항공기, 우주 선 및 부품 제조업/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년 (8~12년)	A	12
	32	가구 제조업	가구 제조업	10년 (8~12년)	A	12
	33	기타 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 제조업/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구 제조업/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10년 (8~12년)	A	12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업/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년 (15~25년)	B	30
	36	수도사업	수도사업	20년 (15~25년)	B	30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0년 (8~12년)	A	12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 처리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0년 (8~12년)	A	12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0년 (8~12년)	A	12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토목 건설업	5년 (4~6년)	C	10
	42	전문직별 공사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 련 전문공사업/건설설비 설 치 공사업/전기 및 통신 공 사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 리 공사업/건설장비 운영업	5년 (4~6년)	C	10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법정내용 년수	수정 급별	수 정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5년 (4~6년)	C	10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상품 중개업/산업용 농축산 물 및 산동물 도매업/음.식 료품 및 담배 도매업/가정 용품 도매업/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기타 전문 도매업/상품 중 합 도매업	5년 (4~6년)	C	10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 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정보통신장비 소매업/섬유, 위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기타 가정 용품 소매업/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연료 소 매업/기타 상품 소매업/무 점포 소매업	5년 (4~6년)	C	10
H 운수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운송업/육상 여객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소화물 전문 운송업/파이프 라인 운송업	5년 (4~6년)	B	8
			철도운송업	20년 (15~25년)	A	24
			해상 운송업/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12년 (9~15년)	A	15
	50	수상 운송업	외항운송업(5011) 중 외항 화물운송업(50112)	20년 (15~25년)	A	24
			정기 항공 운송업/ 부정기 항공 운송업	12년 (9~15년)	A	15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8년 (6~10년)	B	12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업	8년 (6~10년)	A	10
	56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8년 (6~10년)	A	10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법정내용 년수	수정 급별	수 정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58	출판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년 (4~6년)	C	10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 그램 제작 및 배급업	5년 (4~6년)	C	10
	60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5년 (4~6년)	C	10
	61	통신업	우편업/전기통신업	8년 (6~10년)	A	10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년 (4~6년)	C	10
	63	정보서비스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 스업/기타 정보 서비스업	5년(4~6 년)	C	10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은행 및 저축기관/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5년 (4~6년)	B	8
	65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5년 (4~6년)	B	8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 서비스업/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5년 (4~6년)	B	8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5년 (4~6년)	C	10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운송장비 임대업/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5년 (4~6년)	A	6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5년 (4~6년)	B	8
	71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회 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5년 (4~6년)	B	8
	72	건축기술, 엔지니 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년 (4~6년)	B	8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법정내용 년수	수정 급별	수정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전문디자인업/사진 촬영 및 처리업/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년 (4~6년)	B	8
N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5년 (4~6년)	B	8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경비, 경호 및 탐정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5년 (4~6년)	B	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5년 (4~6년)	C	10
P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일반 교습 학원/타 교육기관/ 교육지원 서비스업	5년(4~6년)	B	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병원/의원/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보건업	5년 (4~6년)	B	8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5년 (4~6년)	B	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5년 (4~6년)	B	8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5년 (4~6년)	B	8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산업 및 전문가 단체/노동 조합/기타 협회 및 단체	5년 (4~6년)	C	10
	95	수리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5년 (4~6년)	B	8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마용, 육탕 및 유사 서비스업/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5년 (4~6년)	B	8

대분류	Code No.	중분류	소분류	법정내용 년수	수정 급별	수정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가구내 고용활동/	5년 (4~6년)	B	8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5년 (4~6년)	B	8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5년 (4~6년)	C	10
시험 연구용 자산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5년	C	10
			광학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구, 기타설비	3년	C	6

주) 1. 수정급별은 A : 1.2배, B : 1.5배, C : 2.0배

2. 시험연구용자산의 범위

- 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연구시설
- 나.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 다.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 라.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 마. 직업훈련용 시설

【별표6】 가계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여 백>

항 목	세 목	추정내용 년수(년)	경년 감가율
가구, 가전기구, 가스기기 및 가정용품	가구류	주로 금속제의 것	20 4.00%
		기타의 것	10 8.00%
	가전제품	전자, 전기, 가스기기	10 8.00%
	침구,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류		6 13.33%
	실내장식품	주로 금속제의 것	30 2.67%
		기타의 것	10 8.00%
	식사 및 주방용품	도자기, 유리제품의 것	4 20.00%
		기타의 것	10 8.00%
	악기	주로 금속제의 것	30 2.67%
		기타의 것	16 5.00%
개인사무 기기 및 통신기기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6 13.33%
	전화설비		12 6.67%
	이동무선전화기		6 13.33%
	기타의 것		10 8.00%
시계 및 측정기기	시계		20 4.00%
	도량형기		10 8.00%
	기타의 것		6 13.33%
광학기기 용기 및 금고	광학기기		16 5.00%
	용기		12 6.67%
	내화용 금고		40 2.00%
오락 및 스포츠 기구의	기타의 것		12 6.67%
	당구용구		16 5.00%
	바둑, 장기, 기타 이와 유사한 유희구		10 8.00%
	스포츠용구		6 13.33%
	자전거		8 10.00%
	완구		4 20.00%
기 타	기타의 것		10 8.00%
	주로 금속제의 것		20 4.00%
	기타의 것		10 8.00%

<여 박>